의안번호	2217478
의 뢰 인	최보윤의원
회 답 일	2026.7.23.
추계번호	26B1459
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택시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,244억원, 2031년 1,194억원 등 향후 5년 동안 6,095억원(연평균 1,219억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재정지원 (안 제7조제1항제3호의2 신설)	1,244	1,231	1,219	1,207	1,194	6,095	1,219

주: 개정안에 따른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나타나지 않아 추계하지 않고,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유사사례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, 향후 지방정부별 조례가 제정되어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음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(재정지원)	특별시・광역시・특별자치시・도・특별자치도(이하 “시・도”라 한다)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(제4호의2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.(제1항) 3의2. 택시의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으로의 교체 및 개조 사업<신설>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
1	안 제7조 (재정지원)	○	• (추계)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부재하여,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추산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개정안에 따라 시·도가 택시의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으로의 교체 및 개조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게 됨에 따라, 이를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현행 승합차량으로 운영중인 택시는 기존 차량의 개조를 통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기에 비용·기술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참고하여, 일반택시의 대폐차 시 일정비율의 차량을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차량구매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가정함

○ 개인택시의 대폐차 기간 정보가 부재하고 휠체어 탑승장치 장착여부 등에 관한 가정에 한계가 있어 본 추계에서는 일반택시를 기준으로 소요비용을 추산함

❑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개정안 부칙을 참고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❑ 개정안에 따라 시·도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전체 보유 택시 중 일부 택시를 휠체어 탑승 가능한 차량으로 전환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
○ 다만, 개정안에 따라 각 시·도의 휠체어 탑승 가능한 차량의 보유비율, 지원방법, 지원내용 및 재원분담 비율 등이 정해지지 않았음

○ 이에 따라 본 추계에서는 현재 운행중인 일반택시 차량의 대폐차 시 일정 비율만큼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일반택시와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구매가격의 차액만큼 시·도가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

- 이때 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 중 일정 비율을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 교체하여야 하나 이 비율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현행법에 따른 유사사례를 준용함
-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에 사용되는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
- 저상버스 의무도입 제도 시행 후 대폐차량 중 저상버스 도입 이행비율은 52%로 나타나고 있음(국토교통부 2024)[1)]
- 다만, 현재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규모를 예시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유사입법례 보정계수로 52%를 적용하여, 매년 대폐차되는 일반택시의 52%를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택시로 교체하는 것으로 가정함

❑ (추계방법) 연도별 일반택시 면허대수에 대폐차율 16.05%를 적용하여 대폐차 예상 물량을 산정하고, 해당 물량의 52%를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택시로 구매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산된 물량에 차량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추산함

---

1) 대폐차 대상 차량 5,597대 중 2,909대가 실제 저상버스로 도입(52%)(국토교통부, 2024년)
저상버스와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택시는 모두 기존 차량의 대폐차 시 교통약자 탑승이 가능한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으며, 저상버스는 도로구조·시설 등에 따른 예외노선이 인정되고 차량의 생산·공급 여건도 일반택시와 다르므로, 52%는 개정안에 따른 실제 의무장착 비율이나 준수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

❑ (추계대상) 연도별 일반택시면허대수는 최근 5년간 소폭 감소하고 있으며, 동 추세를 바탕으로 전체 택시수를 추정함

○ 일반택시 대폐차율은 2025년 일반택시 면허대수 대비 법인택시 대폐차 대수 비율인 16.05%가 추계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2] 연도별 일반택시 대폐차 현황

(단위: 대)

	2021	2022	2023	2024	2025	연평균 증가율
일반택시(a)	85,336	84,385	83,355	82,517	81,775	−1.01%
대폐차현황(b)	8,499	9,596	9,630	12,269	13,127	11.48%
비율(b/a)	9.96%	11.37%	11.55%	14.87%	16.05%	−

주: 일반택시는 법인택시 기준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[표 3] 일반택시 대폐차물량 추정: 2027~2031년

(단위: 대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일반택시(a)	80,131	79,322	78,521	77,728	76,943	392,645
대폐차 예상물량 (b=a×16.05%)	12,861	12,731	12,603	12,475	12,349	63,020
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택시 (c=b×52%)	6,688	6,620	6,553	6,487	6,422	32,770

주: 1. 일반택시 물량은 최근 5년간 연평균 감소율을 적용하여 추산함
2. 대폐차 예상물량은 연도별 일반택시 면허대수에 2025년 대폐차율 16.05%를 적용하여 산정함.
3.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택시 수는 대폐차 예상물량에 저상버스 의무도입 실적을 준용한 보정계수 52%를 적용하여 추산함

❑ (지원단가) 시·도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, 일반택시 차량보다 휠체어 탑승 장치가 장착된 택시의 경우 구매비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차량 간 구매가격 차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

○ 일반택시의 구매가격은 평균 3,240만원 수준[2], 휠체어 탑승장치 장착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평균 5,100만원 수준으로 약 1,860만원 차이가 발생

○ 본 추계에서는 차량 1대당 구매가격 평균 차액 1,86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가정

❑ (일부추계)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 시·도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휠체어 탑승 택시 교체 시 차량구매비를 보조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

[표 4]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일반택시 구매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, 대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휠체어 탑승 택시 구매 대수(a)	6,688	6,620	6,553	6,487	6,422	32,770
단가(b)	18.6	18.6	18.6	18.6	18.6	-
합계(A=a×b)	124,392	123,136	121,893	120,662	119,443	609,525

주: 개정안에 따른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나타나지 않아 추계하지 않고,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유사사례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, 향후 지방정부별 조례가 제정되어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음

Ⅳ. 부대의견

❑ 개정안에 따른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나타나지 않아 추계하지 않고,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유사사례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, 향후 지방정부별 조례가 제정되어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음

2) A사 택시 2,950만원, B사 택시 3,530만원 수준으로 나타남(각 차량회사 홈페이지 검색 기준), 전기택시는 정부의 구매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격 고려 시 제외함
조달청 나라쇼핑몰에 등록된 장애인콜택시(카니발, 저상리프트형)의 경우 4,880만원~5,320만원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예승우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